

1.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

□ 사업개요

- 지역별 국토교통 현안·이슈 해결을 위해 현장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·적용하여 지역민 생활 편의 향상 및 지역기반 기술혁신역량 도모

□ 지원규모('22년) : 110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등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1.1.11.(화) ~ 2.11.(금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황수현 수석연구원(031-389-6452)

2.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

□ 사업개요

- 외산의존 부품 국산화 및 시장선도형 고성능 부품 개발과 체계적인 성능 검증 지원을 통한 철도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가능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

□ 지원규모('22년) : 296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철도차량부품개발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 도남호 선임연구원(031-389-6456)

3.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

□ 사업개요

-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중·상류(생산·이송) 부문 플랜트 건설시장으로 진출 확대기반 마련

□ 지원규모('22년) : 179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임청권 연구위원(031-389-6545)

4. 디지털기반 건축시공 및 안전감리 기술개발

□ 사업개요

- 건축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자동화 기술 개발

□ 지원규모('22년) : 43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디지털기반 건축감리 및 시공사동화 로봇 기술개발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김기욱 수석연구원(031-389-6455)

5.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

□ 사업개요

- 고정밀·고품질의 3차원 디지털 국토정보에 동적 정보를 연계하여 국가공간 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

□ 지원규모('22년) : 107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노태헌 책임연구원(031-389-6423)

6.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

사업개요

-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신속 정확한 건물에너지 성능 디지털 진단 기술, 건물 에너지 자동 설계 기술 등 개발

지원규모('22년) : 42억원

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지원분야 :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등

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신청·접수 : 해당없음

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 박중규 수석연구원(031-389-6341)

7. 도심항공모빌리티 가상통합운용 및 검증 기술개발

□ 사업개요

-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(K-UAM GC) 및 UAM의 '25년 초기 상용화 서비스 계획에 따라 가상통합운용시스템 개발을 통한 UAM 이해관계자·종사자의 운용능력 사전확보 및 성능·검증

□ 지원규모('22년) : 48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도심항공모빌리티 가상통합운용 및 검증 기술개발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김세녕 선임연구원(031-389-6471)

8. 도심항공모빌리티 감시정보 획득체계 개발

□ 사업개요

- 도심항공모빌리티(UAM, Urban Air Mobility)의 초기 상용화 서비스('25년) 지원을 위해 항로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항공감시정보(CNSi) 획득 및 활용체계 연구개발·신뢰성 검증

□ 지원규모('22년) : 42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도심항공모빌리티 감시정보 획득체계 개발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14.(금) ~ 2.14.(월) 18:00까지

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김준범 선임연구원(031-389-6469)

9.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

□ 사업개요

- 공공 및 민간 보유 국토교통 분야 R&D 기술의 현장적용 및 시장보급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
□ 지원규모('22년) : 32억원

□ 지원대상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지원분야 :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

□ 지원조건

- 지원형태 :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지원금액 :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

구분	지원기준
가.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위 '가', '나'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'22.1.21.(금) ~ 2.23.(수) 18:00까지
- * 개별 공고 확인 必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김철우 선임연구원(031-389-6399)